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 **제 안 설 명**

- 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지난 23년 7월, 미술의 창작·유통·향유를 촉진하고 국민 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술 분야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「미술진흥법」이 제정되었습니다.
- □ 「미술진흥법」은 ▲ 체계적인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▲ 미술업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, ▲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,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□ 이에 따라 본의원은 상위법 시행에 맞추어 「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안」을 발의하였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, 미술의 창작 지원, 미술 전시 활성화, 지역 미술 활성화

등 서울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공정한 미술품의 거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.

- □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▶시립미술관의 관리·운영, ▶미술관 확충·지원·육성, ▶서울시 공공용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존재하나, '미술 진흥' 관련 조례는 부재하여, 「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」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